

일본 지방 법인과세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이 동 식* · 황 현 순**

차 례

- I. 머리말
- II. 양국 지방재정·세제의 주요현황 비교
 - 1.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
 - 2. 지방재정과 지방세 개요
 - 3. 수도권 편중현상으로 인한 문제점
- III. 우리나라 지방세법상 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 1. 의의
 - 2. 주민세
 - 3. 지방소득세
- IV. 일본 지방세법상 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 1. 의의
 - 2. 주민세
 - 3. 사업세
- V. 일본 지방법인과세제도의 최근 변화
 - 1. 의의
 - 2. 지방법인특별세
 - 3. 지방법인세
- VI. 우리나라 지방법인과세제도의 운용에 대한 시사점
 - 1. 의의
 - 2. 지방자치단체 재원확대의 다양한 방법들
 - 3. 지역편중현상 해소
 - 4. 기타-법인에 대한 외형과세
- VII. 맺음말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접수일자 : 2014. 10. 31. / 심사일자 : 2014. 11. 25. / 게재확정일자 : 2014. 11. 28.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다. 그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사회의 모습도 참 많이 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문제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중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지방재정의 핵심 축은 지방세제도이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세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문제는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심각한 수도권 쏠림현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두 나라는 특이하게 모두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의 약 60%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세를 운용하게 되면 자치단체별 세수의 편중현상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경제활동의 핵심 주체인 법인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2008년에 지방법인특별세를 그리고 2014년 10월 1일부터 국세로서 지방법인세를 신설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일본의 제도를 소개하고 이러한 일본의 제도가 우리나라의 지방법인과세제도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I. 양국 지방재정·세제의 주요현황 비교

1.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

우리나라의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은 약 80 대 20 정도이다.¹⁾ 이 비율

1)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www.digitalbrain.go.kr/kor/view/status/status04_08_01.jsp?code=DB01040801) 참고. 본 자료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조세총액 중 국세가 203조원, 지방세가 53.9조원으로 조사되어 있다(최종방문일 : 2014. 06. 16.).

은 이미 수십여년동안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과거보다 많이 증가하였지만 이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입장에서는 증가하는 세출요인들이 대부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복지비지출과 같이 국가차원의 제도를 단순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은 약 55 대 45 정도이다.²⁾³⁾ 일본도 과거에는 거의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 해당하는 국세대비 지방세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본격적으로 위임하기 시작하면서 재원도 함께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7년 지방으로의 세원이양을 추진하여 국세인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주민세(도부현민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율이 40%를 넘어서게 되었고 그 후 꾸준히 지방세비중이 증대하여 현재의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2. 지방재정과 지방세 개요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과 지방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2014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약 45.9%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다(지방채는 제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은 약 42.3%를 차지한다. 지방교부세가 약 31조 6천억원이며, 보조금이 약 37조 6천억원이다.

2) 일본 지방재정백서(http://www.soumu.go.jp/menu_seisaku/hakusyo/chihou/23data/23czb1-1-3.html)에 의하면, 평성21(2009)년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국세 53.4%, 지방세 46.6%이며, 전후년을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홈페이지 최종방문일 : 2014. 07. 09).

3) 지방교부세와 같은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의 이전이 된 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비중이 40 대 60 정도로 지방정부의 규모가 오히려 더 크다(국중호, 일본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30면).

〈표 1〉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세입예산현황⁴⁾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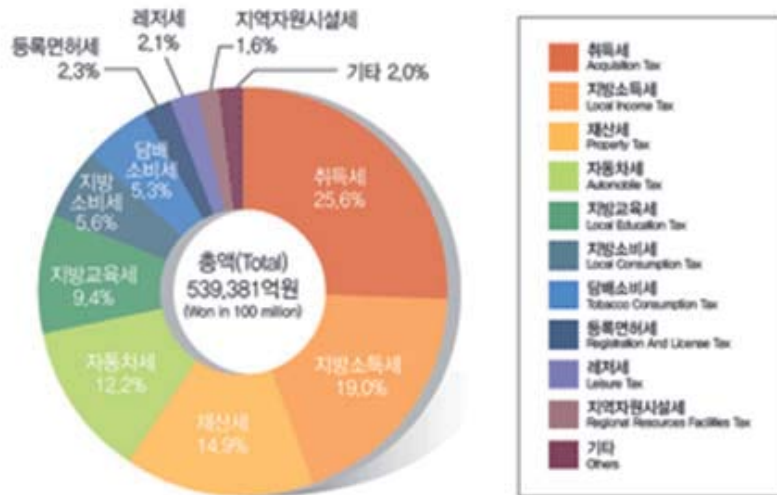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합계	141,039,291	151,095,040	↑ 7.1	156,888,669	↑ 3.8	163,579,329	↑ 4.3
	156,256,793	167,015,291	↑ 6.9	176,992,047	↑ 6.0	-	-
자체수입	79,321,856	85,891,230	↑ 8.3	87,159,383	↑ 1.5	75,089,547	↓ 13.8
	87,195,794	94,395,586	↑ 8.3	97,072,015	↑ 2.8	-	-
지방세수입	49,743,429	53,795,258	↑ 8.1	53,747,023	↓ 0.1	54,475,081	↑ 1.4
	50,812,969	52,906,764	↑ 4.1	52,689,903	↓ 0.4	-	-
세외수입	29,578,427	32,095,972	↑ 8.5	33,412,361	↑ 4.1	20,614,465	↓ 38.3
	36,382,825	41,488,823	↑ 14.0	44,382,111	↑ 7.0	-	-
의존수입	57,981,275	61,264,171	↑ 5.7	65,633,249	↑ 7.1	69,259,046	↑ 5.5
	62,582,686	68,587,316	↑ 9.6	71,978,988	↑ 4.9	-	-
지방교부세	27,408,486	29,215,937	↑ 6.6	31,460,015	↑ 7.7	31,600,605	↑ 0.4
	30,466,519	33,593,204	↑ 10.3	35,137,848	↑ 4.6	-	-
보조금	30,572,790	32,048,234	↑ 4.8	34,173,234	↑ 6.6	37,658,441	↑ 10.2
	32,116,167	34,994,112	↑ 9.0	36,841,140	↑ 5.3	-	-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	-	-	-	-	14,358,017	-
	-	-	-	-	-	-	-
지방채	3,736,159	3,939,639	↑ 5.4	4,096,037	↑ 4.0	4,872,720	↑ 19.0
	6,478,313	4,032,389	↓ 37.8	7,941,045	↑ 96.9	-	-

* 순계기준이며 상단은 당초예산, 하단은 최종예산.

2014년 당초예산기준으로 지방세 세수는 약 54조 4천억원이다. 그 중 취득세가 25.6%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지방소득세로 19.0%를 차지하고 있다.

4) 표 참조, [http://lofin.mospa.go.kr/lofin_stat/budget/gyumo/Gyumo_IncomeBg\(SIDO\)_01.jsp](http://lofin.mospa.go.kr/lofin_stat/budget/gyumo/Gyumo_IncomeBg(SIDO)_01.jsp).

〈그림 1〉 우리나라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율⁵⁾



(2) 일본의 지방재정과 지방세(2012년 기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 가운데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약 47.7%를 차지한다. 지방양여금, 지방특례교부금,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은 약 38.7%를 차지한다.

〈표 2〉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현황(2012년도 지방재정계획)⁶⁾

세 출		세 입	
항 목	구성비(%)	항 목	구성비(%)
급여관계경비	25.6	지방세	41.1
일반행정경비	38.0	지방양여세	2.8
지역경제기반강화고용대책비	1.8	지방특례교부금	0.2
공채비	16.0	지방교부세	21.3
유지보수비	1.2	국고지출금	14.4
투자적경비	13.3	지방채	13.6
공영기업전출금	3.3	사용료 및 수수료	1.7
기타 ¹⁾	0.8	잡수입	4.9
합계(구성비)	100.0	합계(구성비)	100.0%
(규모)	81.9조엔	(규모)	81.9조엔

5) 표 참조, http://lofin.mospa.go.kr/lofin_localtax/LocalTaxStat03.jsp.

6) 표 참조, 국중호, 일본의 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10쪽.

일본에 있어서 지방세는 자치단체 예산의 약 41.1%를 차지하는데, 세목별 비중을 보게 되면 주민세가 전체 세수 가운데 41.1%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고정자산세가 26.8%, 지방소비세가 7.7%, 사업세가 7.0% 수준이다(2011년 기준). 이러한 세수비중을 다시 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광역자치단체인 도부현의 경우에는 도부현민세가 전체 지방세의 39.3%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지방소비세가 19.0%, 사업세가 17.3%이고,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세가 44.6%, 주민세가 42.3%이다.

3. 수도권 편중현상으로 인한 문제점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약 60% 가량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로 세수와 자치단체의 예산규모도 수도권에 거의 60%가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2012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총괄예산 총액 167조153억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의 예산이 103조724억가량으로 약 61.7%를 차지한다.⁷⁾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존재한다.

그 결과로 지방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특수한 제약이 따른다. 즉, 지방자치의 원리상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순수한 의미의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게 되면 자치단체간 경제력 편차가 재정의 편차로 연결되어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대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7) 재정고(www.mospa.go.kr) 지방자치단체 예산 단체별 총계규모(총괄).

Ⅲ. 우리나라 지방세법상 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의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세로 과세되는 세목은 총 11개이다. 이 중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세목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가장 전형적인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에 법인에게도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지방세 세목을 여기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글의 목적인 일본의 지방법인세제도와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서 비교대상을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한정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개 세목에 대해 각각의 과세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2. 주민세

(1) 의의

지방세법상 주민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이면서 시·군세이다. 지방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0.2-0.4%수준이고(2012년), 시·군의 경우에는 1.0-1.3%수준이다. 주민세에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3종류가 있다.

(2) 주민세의 내용

1) 균등분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으로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

다.8) 납세의 경우, 개인의 경우는 주소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의 경우는 사업소의 소재지이다.9)

균등세의 세율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경우에는 5만원이다. 법인의 표준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10)

<표 3>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세율¹¹⁾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8) 지방세법 제75조.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의 경우 납세의무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직전 연도에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계산하기 힘들 경우에는 과세유무 또는 부과액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김태호,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4, 615면).

9) 지방세법 제76조 제1항.

10)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11)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¹²⁾

2) 재산분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¹³⁾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¹⁴⁾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개인과 법인)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을 수 있다.¹⁵⁾ 납세지는 지방세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부과액은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¹⁶⁾ 그러나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아 면세점에 해당한다.¹⁷⁾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

12) 지방세법 제79조.

13) 지방세법 제74조 제2호.

14)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15)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16)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17) 지방세법 제82조.

다.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과세당국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¹⁸⁾

3) 종업원분

종업원분 주민세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며,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¹⁹⁾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다. 납세지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²⁰⁾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이며, 세율은 원칙적으로 당해 급여총액의 1천분의 5이지만,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²¹⁾

종업원분 주민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²²⁾

18) 지방세법 제83조.

19)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20) 지방세법 제75조 제3항 및 동법 제76조 제3항.

21) 지방세법 제84조의2 내지 제84조의4.

22) 지방세법 제84조의6.

3. 지방소득세

(1) 의의

지방소득세는 2009년까지 부과되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합하여 2010.1.1. 법개정으로 도입한 것이다.²³⁾ 당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종전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합하여 종전의 세수를 유지하기 위한 세목간의 조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²⁴⁾

지방소득세는 그 도입시점부터 2013년까지는 그 명칭이 지방소득세였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득할 주민세,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부과되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형태로 개편하여, 종업원할 지방소득세는 주민세가 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을 사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되었다.²⁵⁾

(2) 내용

1) 개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²⁶⁾의 소득을 말하며,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²⁷⁾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이다.²⁸⁾ 또한 세율에 대해서는 2010년 개정 시에는 지방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23) 김태호,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4, 635쪽.

24) 권강웅·권단, 지방세법해설, (주)광교이텍스, 2014, 1082쪽.

25) 김태호,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4, 635쪽.

26)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27)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28)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규정하고 있었지만, 2014년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에서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게 되었다.

〈표 4〉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2)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²⁹⁾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³⁰⁾ 납세지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9조의 납세지를 따르며,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³¹⁾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에서

29) 지방세법 제85조.

-생략-

5.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6.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7.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0)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5〉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과거 세율은 위 소득세분과 유사하게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었다. 현재처럼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가세(surtax) 과세방식에서 벗어나 독립세 형태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역경제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 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지방자치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³²⁾

IV. 일본 지방세법상 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의의

일본 지방세법상 법인에 대한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세목도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와의 법제비교를 위해 그 대상을 주민세와 사업세로 한정하고자 한다. 주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에는 도부현민세(광역자치단체 주민세)와 시정촌민세(기초자치단체 주민세)가 있다.³³⁾ 이것을

31)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32) 권강웅·권단, 지방세법해설, (주)광교이텍스, 2014, 1082쪽.

33) 도도부현(都道府縣)은 1개의 도(동경도(東京都)), 1개의 도(북해도(北海道)), 2개의 부(오사카부(大阪), 교토부(京都)), 43개의 현(縣)으로 구성되어 총 47개이다. 그리고 시정촌은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789개의 시(市), 746개의 정(町), 184개의 촌(村)으로 총 1719개이다. 시정촌은 인구의 규모에 따라 구분하며, 정(町)이 시(市)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5만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미즈시마 레오, 일본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

총칭하여 주민세라고 부른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법인분이 있는데 주로 개인분 주민세가 주민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업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사업세는 일종의 소득과세라고 할 수 있다. 사업세는 도도부현 지방세 세수의 17.3%를 차지하여(2011년 계획치 기준) 도부현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³⁴⁾ 사업세가 차지하는 17.3% 가운데에는 개인분이 1.4%이고 법인분이 15.9%를 차지하여 법인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 주민세

(1) 개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정촌)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다. 세금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상은 부담분임사상, 즉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등은 당연히 그 경비를 서로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세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이 각각 부과주체가 되며, 개인주민세와 법인주민세로 나누어 진다. 도부현민세는 도부현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3%(2011년 계획치)이고, 시정촌민세는 시정촌세 수입의 42.3%를 차지하여 지방세 가운데 기간세로 자리잡고 있다.³⁵⁾ 개인분과 법인분 주민세 가운데에는 개인분의 비중이 훨씬 크다. 예컨대, 도부현민세 비중인 39.3% 가운데에 개인분 주민세는 33.0%이고, 법인분은 4.6%이다. 시정촌세의 경우에도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³⁶⁾

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32-33쪽).

34) 참고로 평성25(2013)년 자료를 보면, 도부현세와 시정촌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3.8%, 56.2%였다. 그 중 도부현세 가운데, 법인주민세가 1.9%, 법인사업세가 11.5%를 차지했으며, 시정촌세에서 법인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였다(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250033.pdf(지방세수의 구성(평성25년도 지방재정계획액) 최종 방문일 : 2014. 05. 19.).

35) 국중호, 일본의 지방세제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2012, 65쪽.

36) 국중호, 일본의 지방세제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2012, 65쪽.

(2) 개인주민세

개인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 두 가지 종류로 부과된다. 개인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①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주소를 둔 개인과 ②주소는 없지만 해당 지역에 사무소, 사업소 혹은 가옥부지(이하 “사무소”등이라 함)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에는 균등할과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되며, 주소가 없이 단지 사무소 등을 가진 개인의 경우에는 균등할 주민세만 부담한다.

균등할 개인주민세는 도도부현세의 경우에는 1,000엔이고, 시정촌민세의 경우에는 3,000엔이다. 물론 이 세율은 표준세율이고 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대상으로 소득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도도부현세의 경우에는 4%, 시정촌민세의 경우에는 6%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도 제한세율 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세율조정을 할 수 있다.

(3) 법인주민세

개인주민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도도부현의 법인주민세(일본 지방세법 제23조 이하)와 시정촌의 법인주민세(동법 제292조 이하)가 있으며, 모두 균등할과 법인세할로 나누어 부과된다.

법인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①도도부현·시정촌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②도도부현·시정촌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는 없는 상태에서 기숙사를 보유한 법인, ③도도부현·시정촌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있고 법인과세신탁의 인수업무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개인이다. ①의 경우에는 균등할과 법인세할이 모두 부과되고 ②의 경우에는 균등할만 부과되며, ③의 경우에는 법인세할만 부과되는 차이점이 있다.

균등할 법인주민세는 법인의 자본금액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부과된다.

〈표 6〉 일본의 균등할 법인주민세 세율³⁷⁾

과세표준의 구분		시정촌 법인주민세 균등할	도부현 법인 주민세 균등할
법인의 자본금액	시정촌내 사무소의 종업원수		
50억엔초과	50명을초과	300만엔(360만엔)	80만엔
	50명이하	41만엔(49만2천엔)	
10억엔초과 ~ 50억엔이하	50명을초과	175만엔(210만엔)	54만엔
	50명이하	41만엔(49만2천엔)	
1억엔초과 ~ 10억엔이하	50명을초과	40만엔(48만엔)	13만엔
	50명이하	16만엔(19만2천엔)	
1천만엔초과 ~ 1억엔이하	50명을초과	15만엔(18만엔)	5만엔
	50명이하	13만엔(15만6천엔)	
1천만엔 이하 및 표하단 a~e의 법인	50명을초과	12만엔(14만4천엔)	2만엔
	50명이하	5만엔(6만엔)	

- a.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가운데 균등할을 부과할 수 없는 법인이외의 공익법인
- b. 인격이 없는 사단
- c.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
- d.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상호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갖고 있지 않은 법인
- e. 자본금액이 1천만엔 이하의 법인

법인세할 법인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진 법인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액³⁸⁾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³⁹⁾ 이렇게 법인세할은 기본적으로 법인세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법인세의 부가세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할 법인주민세의 표준세율은 도도부현의 경우에는 5.0%, 시정촌의 경우에는 12.3%이다.

37) 국중호, 일본의 지방세제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2012, 86쪽.

38) 여기서 법인세액이라는 것은 법인세의 관계법령에 의해 계산된 법인세액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금액이다(각종의 세액공제를 하기 전의 것으로, 각종 가산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일본 지방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292조 제1항 제4호).

39) 일본 지방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292조 제1항 제3호.

3. 사업세

(1) 개요

사업세는 주민세와 달리 도도부현에서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사업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과 법인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소재하는 도도부현에 납세의무를 부담한다.⁴⁰⁾ 주민세와 달리 사업세의 경우에는 법인 사업세가 사업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 개인사업세

개인사업세의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를 1종, 2종, 3종으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소득유형에 대해 전년 중에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5%(1종), 4%(2종), 5% 또는 3%(3종)의 세율을 적용한다.⁴¹⁾

(3)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세의 경우에는 수익과세형과 외형과세형이 있다. 수익과세형 법인사업세의 과세표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전기공급업, 가스공급업,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는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외 법인은 원칙적으로 국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사업세의 과세표준, 즉 소득할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처럼 업종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른 것은 법인사업세는 기본적으로 사업활동의 규모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제도를 만들었는데 통상의 경우에는 소득규모가 바로 사업활동규모를 결정하지만, 전기공급업 등의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가 반드시 사업활동의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⁴²⁾.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40) 일본 지방세법 제72조의2 제1항.

41) 사업유형구분과 구체적 세율은 참조, 국중호, 일본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94쪽.

42) 전기공급업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에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어 사업규모와 소득규모가 일치하지 않는다.

〈표 7〉 일본의 법인사업세 세율⁴³⁾

법인의 종류		과세대상	표준세율	잠정조치세율 ¹⁾
아래 (a)이 외의법 인	특별법인	각 사업년도 소득 중 400만엔 이하의 금액 각 사업년도 소득 중 400만엔 초과소득 및 청산소득	5% 6.6%	2.7% 3.6%
	자본금액 또는 출자 금액이 1억엔 초과법인 ²⁾	부가가치할 자본할 소득할	0.48% 0.2%	
		각 사업년도 소득 중 400만엔 이하의 금액	3.8%	1.5%
		각 사업년도 소득 중 400만엔 초과 800만엔 이하 각 사업년도 소득 중 800만엔 초과 및 청산소득	5.5% 7.2%	2.2% 2.9%
기타법인 (자본금액 이 1억엔이하)	각 사업년도 소득 중 400만엔 이하의 금액 각 사업년도 소득 중 400만엔 초과 800만엔 이하 각 사업년도 소득 중 800만엔 초과소득 및 청산소득	5% 7.3% 9.6%	2.7% 4.0% 5.3%	
(a)전기·가스공급 업, 보험업을하는법인	수입금액	1.3%	0.7%	

주: 1) 잠정조치세율은 2008년 10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각 사업년도와 관련된 법인의 사업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사업세의 소득할·수입할을 표준세율이하로 하는 조치에 따른 세율이다.
2) 공익법인, 특별법인, 인격이 없는 사단, 투자법인 및 특정목적회사를 제외한다. 여기서 특별법인이라함은 협동조합 등, 증권거래소 및 상품거래소, 의료법인을 말한다.

외형과세형 법인사업세는 평성15(2003)년 세법개정으로 2004년에 새로 도입된 것이다. 과거 거품경제 등으로 인해 사업세가 세수입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주요원인⁴⁴⁾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사업세에 “외형표준과세”를 도입하였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세는 도도부현 지방세세수의 17.3%를 차지하여(2011년 계획치 기준) 도부현의 중요한 재원이었고, 그 중에서도 법인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일본 법인가운데 2/3가 결손법인인 상황 하에

43) 국중호, 일본의 지방세제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2012, 99쪽.

44) 구체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사업세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목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소화60(1985)년에는 법인사업세의 비중이 도부현세 가운데 38.6%를 차지하였으나, 평성23(2011)년도에는 17.5%까지 하락한 것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pri/publication/zaikin_geppo/hyou/g735/735.htm) 자료 地方稅收入の構成の累年比較 참고.).

서 수익과세형 법인사업세의 부과는 도도부현에게 치명적인 재정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04년 도입된 외형과세형 법인사업세는 세부담의 공평성, 조세성격의 명확화, 기간세의 안정화, 경제의 활성화 등의 관점에서 논의가 되었다. 이 세목은 법인이 산출하는 부가가치를 명확히 파악하여 현재의 소득과세에 비해 “세율은 낮고, 과세표준은 넓게” 하면서 공평한 과세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⁴⁵⁾

2003년도의 세제개정으로 외형과세형 법인사업세를 부담하는 법인은 모든 법인이 아니고 법인사업세의 과세표준을 소득금액이 아니라 수익금액으로 하게 되는 전기공급업, 가스공급업,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와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회사 가운데에서도 특정법인⁴⁶⁾을 제외하게 된다. 그 외의 회사 가운데에서 다시 자본금액 등이 1억엔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정하여 외형과세형 법인사업세를 부담한다. 이 회사들은 소득할액을 기준으로 수익과세형 법인사업세를 부담하는 이외에 추가로 외형,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할액 및 자본할액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후자를 외형과세형 법인사업세라 한다.

부가가치할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액이다. 이것은 각 사업연도의 보수급여액(일본 지방세법 제72조의15), 순지급이자(동법 제72조의16) 및 순지급임차료(동법 제72조의17)의 합계액(수익배분액이라 한다)과 각 사업연도의 단년도손익(동법 제72조의18. 결손금의 이월·환급 전의 손익)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동법 제72조의14). 국외에서 사업을 행하는 국내법인의 부가가치할의 과세표준인 부가가치액은 국내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액으로 한다(동법 제72조의19).

자본할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자본 등의 금액으로 하며⁴⁷⁾,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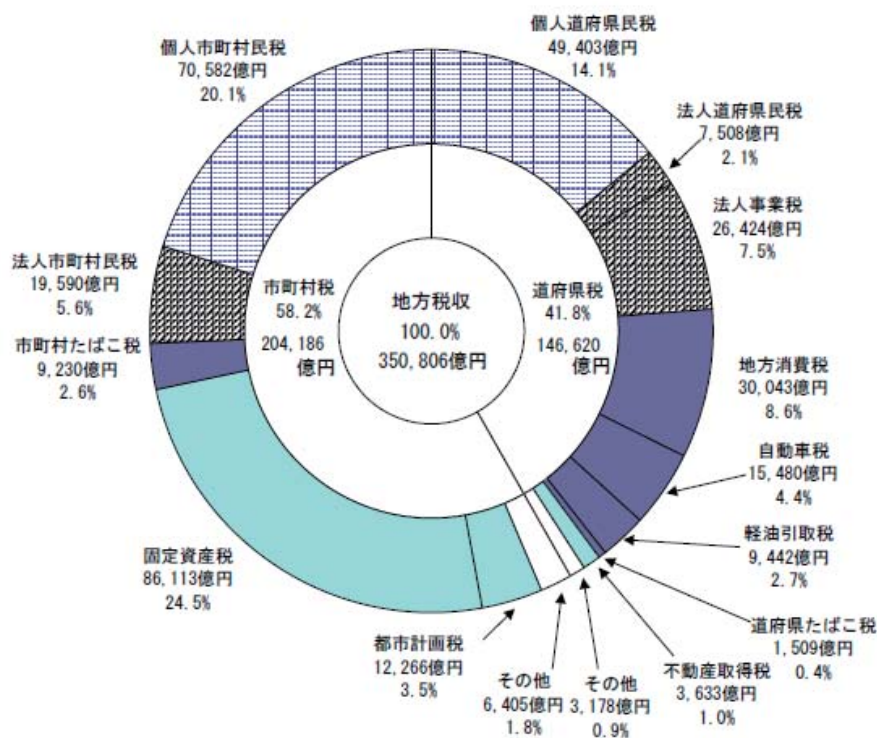
45) 이는 지방분권 확립 등의 목적이 있었으며, 외형표준과세는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 그 사업활동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었다(국중호, 일본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103-104면).

46) 예컨대, 일본 지방세법 제72조의4 제1항 각호, 제72조의24의7 제5항 각호,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항에 규정하는 투자법인,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목적회사 및 일반사단법인(비영리형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9호의2에 규정하는 비영리형법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일반재단법인(비영리형법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등.

적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있어 자본 등의 금액(자본금액 또는 출자 금액과 자본적립액 또는 연결개별적립금액의 합계액)이 된다.

〈그림 2〉 평성 26(2014)년도 지방세수의 구성내역⁴⁸⁾

地方税収の構成(平成26年度地方財政計画額)



(注) 1 「個人道府県民税」は、利子割、配当割及び株式等譲渡所得割を含む。
 2 「固定資産税」は、土地、家屋、償却資産の合計である。
 3 「法人事業税」は、地方法人特別譲与税を含まない。

47) 일본 지방세법 제72조의12 제1호 ㄱ.

48) 總務省、ア 地方税収の構成(平成26年度地方財政計画額) 参照.

V. 일본 지방법인과세제도의 최근 변화

1. 의의

일본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지방세과세의 핵심으로 우리는 위에서 사업세와 주민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지방법인과세제도에 최근 큰 변화가 있었다. 2008년에는 사업세의 일부를 분리시켜 지방법인특별세를 신설하였고, 2014년에는 주민세의 일부를 분리시켜 지방법인세라는 세목을 신설하였다. 이 두 개 세목은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다. 단, 국가는 이 세목으로 거둔 세수를 자치단체에 일정한 기준으로 배분을 한다. 일본에서 이 두 개 세목이 신설된 취지는 자치단체별 세수편차가 컸던 사업세와 주민세의 일부를 이러한 세목으로 전환시켜 그 세원을 자치단체에 재배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지방법인특별세와 지방법인세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2. 지방법인특별세

(1) 도입과정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원의 편재성과 세수격차(주민 1인당 세수의 격차)가 크며, 특히 사업세는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의 침체가 지속됨으로 인해 인구와 재원이 수도권에 더욱 집중되면서 더 심각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부가 일본지방세제의 최대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⁴⁹⁾

일본의 입법자는平成20(2008)년 세제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질때까지 잠정적인 조치로 지방법인특별세를 창설하였다.⁵⁰⁾

49) 金子 宏、租税法、弘文堂、2013、534頁.

50) 小谷 知也、消費税率及び地方消費税率の引上げの確認について、地方税、地方財務協會、2013.11.、27頁.

(2) 과세내용

평성20(2008)년에 「지방법인특별세 등에 관한 잠정조치법(평성20년 법률 제25호)」이 제정되었으며, 동법을 근거로 지방법인특별세가 과세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세제의 발본적 개혁을 할 때까지 잠정조치로서, 법인사업세의 세율을 인하하는(동법 제2조) 한편, 법인사업세에 대한 부가세로서 지방법인특별세(동법 제3조 내지 제9조)를 창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도부현은 사업세에 추가하여 지방법인특별세를 징수하고, 그 세수를 전액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 국가는 납부받은 세수를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에 양여(동법 제32조 이하)한다. 이는 단적으로 말하면, 동경도 등과 같이 주민 1인당 세수가 높은 도부현의 사업세의 일부를 분리해 지방법인특별세로서 징수하여, 그 세수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도부현에 분배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지방법인특별세는 형식적 분류상으로는 국세로 되어 있다.

3. 지방법인세

(1) 도입과정

사회보장·조세일체 개혁에 따라 잠정적 조치로 도입된 지방법인특별세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한 가지로써 일본의 입법자는 지방법인세의 교부세원화를 검토하게 되었다.⁵¹⁾

평성24(2012)년 9월 지방재정심의회에 「지방법인과세의 존재방식 등에 관한 검토회」가 설치되었다. 동 검토회에서는 법인사업세(도도부현)보다 법인주민세(도도부현, 시정촌)의 지역별 편재성이 높은 것을 이유로 하여, 법인주민세의 일부를 교부세원으로 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었다.⁵²⁾

51) 安藤 範行、歳出特別枠・別枠加算の見直しと地方法人税の交付税資源化、立法と調査 No. 349.、参议院事務局企畫調整室編集・發行、2014. 2.、39頁.

52) 安藤 範行、歳出特別枠・別枠加算の見直しと地方法人税の交付税資源化、立法と調査 No. 349.、参议院事務局企畫調整室編集・發行、2014. 2.、47頁. 검토회의 위원은 지방

(2) 과세내용

지방법인세는 법인주민세의 세율을 일부 인하하여 지방세 세수를 줄이는 대신 국세로서 지방법인세를 신설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편성하였다. 구체적인 주민세의 세율 인하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8〉 지방법인세의 개정에 따른 주민세율 변화⁵³⁾

	개정 전	개정 후	비율
도부현민세	5.0%(6.0%)	3.2%(4.2%)	1.8% 감소
시정촌민세	12.3%(14.7%)	9.7%(12.1%)	2.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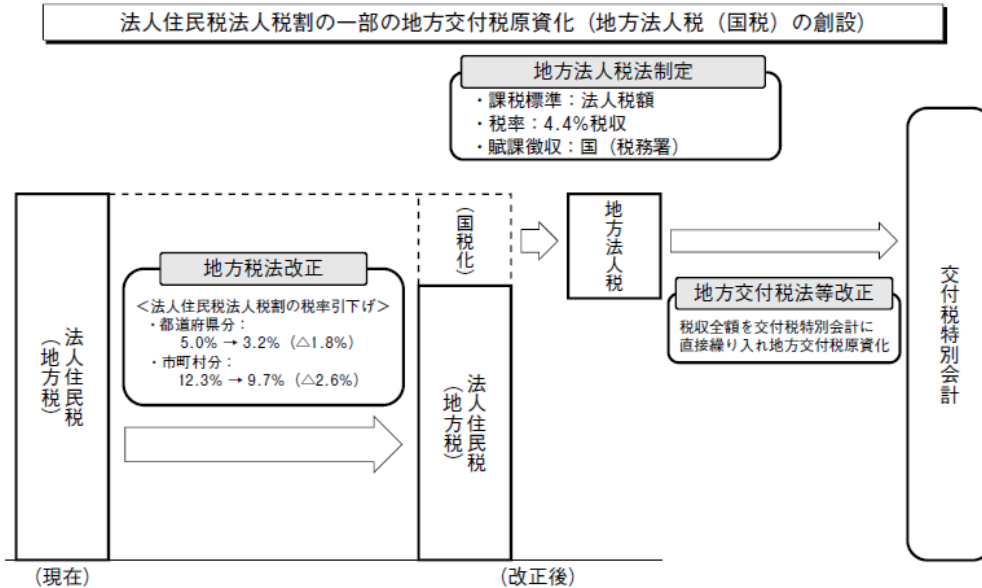
* 주 () : 제한세율

법인주민세의 일부를 분리시켜 국세로 지방법인세를 신설함과 동시에 종래 국세이던 지방법인특별세의 1/3을 인하하여 지방세인 법인사업세의 규모를 확대시켰다.

재정심의회위원으로, 관련 분야의 학식경험자 또는 지방공공단체 관계자를 「특별위원」으로 추가하여 구성되었다.

53) 總務省、平成26年度稅制改正の概要 (地方法人課稅の偏在是正關係) 參照。

〈그림 3〉 지방법인세와 지방법인특별세의 배분방법⁵⁴⁾



지방법인세법은 평성26(2014)년 3월 31일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 제1조에서는 「이 법률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액계산의 방법, 신고 및 납부의 절차 및 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동법의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⁵⁵⁾ 또한 동법 제2조에서는 여러 종류의 법인 또는 각종 신고서 등 동법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률에 따라 지방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⁵⁶⁾ 그리고 제5조에서는 「법인의 각 과세사업연도의 기준법인세액에는 이 법률에 따른 지방법인세를 부과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각 과세사업연도의 기준법인세액이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⁵⁷⁾ 또한 구

54) 財務省、地方税法等の改正、990頁.

55) 日本 地方法人税法 第一條(趣旨) この法律は、地方交付税の財源を確保するための地方法人税について、納税義務者、課税の対象、税額の計算の方法、申告及び納付の手續並びにその納税義務の適正な履行を確保するため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56) 日本 地方法人税法 第四條(納税義務者) 法人税を納める義務がある法人(以下「法人」という。)は、この法律により、地方法人税を納める義務がある。

57) 日本 地方法人税法 第五條(課税の対象) 法人の各課税事業年度の基準法人税額に

체적으로 기준법인세액에 대해서는 동법 제6조에서 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인세법의 해당조문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납세지는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은 「법인의 지방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법 제16조 내지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은 법인세의 납세지 지정처분의 취소가 있던 경우에 지방법인세에 대해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⁵⁸⁾ 동법 제2장에서는 과세표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에서 「지방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사업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각 과세사업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액은 각 과세사업연도의 기준법인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⁵⁹⁾

서울의 경우, 동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은 「지방법인세액은 각 과세사업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액에 100분의4.4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세율이 4.4%⁶⁰⁾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각 과세사업연도의 기준법인세액에 법인세법 제67조 제1항 또는 제8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과세표준법인세액은 당해 기준법인세액에서 당해 가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⁶¹⁾

は、この法律により、地方法人税を課する。

58) **日本 地方法人税法 第八條(納税地)** 法人の地方法人税の納税地は、当該法人の法人税法第十六條から第十八條までの規定による法人税の納税地とする。

2 法人税法第十九條の規定は、法人税の納税地の指定の處分の取消し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地方法人税について準用する。

59) **日本 地方法人税法 第九條** 地方法人税の課税標準は、各課税事業年度の課税標準法人税額とする。

2 各課税事業年度の課税標準法人税額は、各課税事業年度の基準法人税額とする。

60) 4.4%의 비율은 본고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세율의 개정 후 감소하는 도부 현민세(1.8%)와 지정촌민세(2.6%)의 합계인 것이다.

61) **日本 地方法人税法 第十條(税率)** 地方法人税の額は、各課税事業年度の課税標準法人税額に百分の四・四の税率を乗じて計算した金額とす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法人の各課税事業年度の基準法人税額に法人税法第六十七條第一項又は第八十一條の十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加算された金額がある場合には、前項の課税標準法人税額は、当該基準法人税額から当該加算された金額を控除した金額とする。

VI. 우리나라 지방법인과세제도의 운용에 대한 시사점

1. 의의

흔히들 우리나라에는 지방세의 모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한다.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확대해야 하는데 지방세를 확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격차가 확대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는 일본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러한 일본에서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도입한 지방법인특별세와 2014년 도입한 지방법인세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시사점으로 우리가 주목할 점들을 나뉘어 정리해 보기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재원확대의 다양한 방법들

흔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하게 되면 대부분 자주재원, 그 중에서도 지방세의 확대를 강조하게 된다. 그런데 일본에 있어서 지방법인특별세와 지방법인세는 국세이다. 국세로 거둔 재원을 일본정부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하게 된다.⁶²⁾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지방재정을 확대한다고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이 지방세의 확대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글에서 살펴본 일본의 입법례처럼 비록 외형상으로 지방세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재원을 자치단체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것도 제도를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정신에 위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국세로 징수한 세원을 다시 자치단체에 배분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배분하는지 여부일

62) 지방재원의 확대는 지방세 세목의 신설 혹은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경우에 이 두 세목을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분류하여 자치단체간의 공동세 형태로 운영을 하였다면 어떠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것이다. 적어도 세목의 설계와 관련해서는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지역편중현상 해소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와 경제력의 특정지역편중은 자연스레 세원의 편중현상으로 연결된다. 일본은 세원의 지역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에는 지방세의 하나인 법인사업세의 일부를 분리시켜 국세로서 지방특별법인세를 신설하였고, 다시 2014년에는 지방세의 한 종류인 법인주민세의 일부를 분리시켜 국세로서 지방법인세를 신설하였다. 이는 일본 지방세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과세의 핵심이 되고, 자치단체의 재원으로서도 큰 영향이 있는 주민세와 사업세를 직접 수정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방세의 세수 축소일 수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확대로 연결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자치단체 간 재원의 재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치단체별 재정력 격차가 큰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과 같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격차를 완화시키는 시도를 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수 있다고 본다.

4. 기타-법인에 대한 외형과세

일본의 경우 사업세가 도도부현에게 중요한 세원이었다. 사업세는 소득과세형태로 과세가 되고 있었는데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일본법인의 상당수가 적자법인으로 전환되게 되자 도도부현에게 치명적인 재정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⁶³⁾ 그래서 일본의 경우 2004년에 법인사

63) 국중호, 일본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101-102쪽.

업세에 있어서 외형과세를 도입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방소득세로서 법인에 대한 과세는 수익과세형만 존재하고, 주민세에서 일부 자본과 종업원급여규모 등을 반영하는 형태로 과세를 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으면 안되겠지만 일본의 경험을 참조하여 앞으로 법인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수익에 대한 과세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도록 외형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개선을 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VII. 맺음말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 대 20 정도이지만, 일본은 55 대 45 정도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이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가 지방재정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노력은 하였지만 추구하는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위와 같은 비율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일본보다 세출규모와 지방세수와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향후에는 어떠한 제도를 설계하여 큰 괴리를 좁힐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지방법인과세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일본의 제도가 우리 제도 운영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이 2008년 지방법인특별세, 2014년 지방법인세를 도입한 것은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개 세목은 국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독립적으로 가져서 세수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만이 지방세수의 확대라고 본다면, 일본의 지방법인특별세나 지방법인세와 같은 형태의 입법이 바람직한 형태의 제도라고는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방재원의 확대는 반드시 지방세 세목의 신설 혹은 확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

체가 당해 단체의 주민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권한을 가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자율권을 가진 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지역편중이 심한 나라에서는 자치단체 간의 실질적인 형평성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의 지방법인특별세, 지방법인세와 같은 형태의 입법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별 재정력 편차가 어느 수준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 그러한 재정력 편차를 축소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다른 측면에서 지방자치제도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A. 저 서

권강웅·권단, 지방세법해설, (주)광교이텍스, 2014.

김태호,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4.

안전행정부, 2013지방세통계연감.

B. 논 문

김필현,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국중호, 일본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국중호·한상국, 일본의 법인과세 개혁과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2.

라휘문, 지방법인세 도입필요성, 대안 그리고 효과,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1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미즈시마 레오, 일본의 재정개혁 법제에 대한 최근의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13.

미즈시마 레오, 일본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송상훈·류민정, 지방법인세 도입의 논리와 과세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2.

이동식, 독일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이동식,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방안,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이동식,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방안,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2.

〈외국문헌〉

A. 저 서

金子 宏、租稅法、弘文堂、2013.

山本守之、租稅法の基礎理論、稅務經理協會、2013.

大石利雄·岡本全勝、地方財政法、株式會社 ぎょうせい、1996.

Susanne Baer, in: Wolfgang Hoffmann-Riem/Eberhard Schmidt-Assmann,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and I: Methoden, Maßstäbe, Aufgaben, Organisation, C.H.Beck.

B. 논 문

安藤 範行、歳出特別枠·別枠加算の見直しと地方法人税の交付税資源化、立法と調査 No. 349.、参議院事務局企画調整室編集·発行、2014. 2.

小谷 知也、消費税率及び地方消費税率の引上げの確認について、地方税、地方財務協會、2013.11.

半谷 俊彦、ドイツ地方財政にみる税源交換の事例、地方税、地方財務協會、2013.11.

石井 隆一、平成26年度地方税制改正について、地方税、地方財務協會、2014.1.

總務省自治稅務局、平成26年度稅制改正を巡る議論について、地方税、地方財務協會、2014.1.

<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다. 그 와중에 우리 사회에서는 각 지방의 홍보 등을 위해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동안에 반드시 활기차고 좋은 현상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효율적인 규제의 범람, 경제인구의 축소 및 고령화와 복지증대 현상 등 여러 사회문제 또한 유발하고 있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분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20 정도로 심하며, 또한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마저 수도권에 약 60%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는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인구와 경제력의 편중현상이 심각하다면, 즉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방법인소득세 역시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지방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과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동경을 중심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많이 편중되어 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55대45 정도로 우리나라에게 참고가 될 만할 것이다. 또한 2014.10.1.부터 지방세 가운데 법인주민세의 일정부분을 국세로서 징수하여 교부세원화 하는 지방법인세는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권한의 확대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응 참고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한 적절한 과세권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지방세제도의 구축방안의 고찰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에서 지방세 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해 행해진 법인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의 도입과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주민세의 일부를 지방교부세원화 한 지방법인세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운용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주제어 : 지방자치, 지방세, 지방재정, 지방법인세, 지방교부세

Introduction and Implication of Local Corporation Tax of Japan

Lee, Dong-Sik*, Hwang, Heon-Sun**

In Korea, the local self governing has already been doing over 20 years. During that time, it did not happen only positive aspects. Many problems arose in the local governing system.

To make genuine local self governing, independence of local finance is most important. It is 80 to 20 ratio in national tax and local tax in Korea. And the 60% of the 20% is in capital area even.

In this situation, local income tax is become an independent tax from surtax. But the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except capital area will worsen because of narrow based in capital area.

In this sense, this thesis refer to Japan because Japan is similar to Korea in social condition. The ratio of national tax and local tax in Japan was similar to Korea. But now it is 55 to 45 ratio in national tax and local tax. So, the way to achieve the ratio like present condition is worthy of consider. For a spread of a local grant tax, Japan used the way to make a source of revenue from a portion of resident tax of corporate. And then it is distributed to th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weak in financial power. Even though that way is not perfect one to expand local finances, it will gain a different perspective to expand local finances.

It is necessary to not only construction method of local tax system for symbiotic relationship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but also an appropriate expansion of authority of taxation for spread of a source of revenue in local governments.

Key Words : Local Self Governing, Local Tax, Local Finance,
Local Corporation Tax, Local Grant Tax

* Prof. Dr, Law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Ph.D. Program, Law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